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70 발의연월일: 2024. 12. 10.

발 의 자: 강득구·김기표·김성환

김 윤 · 김태선 · 서영교

이강일 · 이용우 · 이학영

채현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·구금(拘禁)·압수·수색·거주·이전·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이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 제약될 수 있음.

특히,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·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·구금을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원천 차단될 수 있음.

이에, 권한의 행사범위를 명확히 해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자 함(안 제2조제5항, 제6조제3항, 제9조제1항 및 제11

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항 중 "심의를"을 "의결을"로 한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이 경우에도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 회를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제2항 중 "심의를"을 "의결을"로, "한다"를 "하며,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) ①	제2조(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) ①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
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	⑤
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	
회의의 <u>심의를</u> 거쳐야 한다.	<u>의결을</u>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제6조(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・	제6조(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・
감독) ①・② (생 략)	감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엄사
	령관은 국회와 관계되는 사항
	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승인
	<u>을 받아야 한다.</u>
제9조(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)	제9조(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)
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	①
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	
포・구금(拘禁)・압수・수색・	
거주・이전・언론・출판・집회	
•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	
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	
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	
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	
<u><단서 신설></u>	다만, 이 경우에도 계엄사령관
	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

- ② ~ ④ (생 략) 제11조(계엄의 해제) ① (생 략)
 -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 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 무회의의 <u>심의를</u> 거쳐야 <u>한다</u>.

③ (생략)

하며	국회를	점거하여서는	아
니 된	[다.		
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 제11조(계엄의 해제) ① (현행과 같음)
 - 2 -----
 - -----<u>의결을</u>-----<u>하며,</u>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 여야 한다.
 - ③ (현행과 같음)